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2005. 9. 8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8월 26일 · 김성배 의원 외 7인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제1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2차 운영위원회(2005. 9. 8)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 성 배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(대통령령 제16058호, 2005. 8. 5)되어
자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상향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
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의 의정활동비 등
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법 개정으로 조례명을 “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의의정활동비등지

급에관한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
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변경함

-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조정(안 제3조 제1항)
 - 회기수당 일 70,000원을 일 100,000원으로 30,000원 상향

다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6(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라 도 군)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기 타 의 견 요 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